

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합시다



교육과학기술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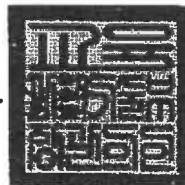
수신자 전라남도교육감(총무과장)
(경유)

제목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질의 회신

1. 관련: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-3885(2013.2.27) “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질의”
2. 위 대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<붙임>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질의 회신 답변서 1부. 끝.

교육과학기술부



주우관 김운후 행정사무관 대결 03/15
하영근

협조자

시행 체육예술교육과-1424 (2013.03.15.) 접수 총무과-4996 (2013.3.15.)
우 110-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(세종로, 정부중앙청사) /www.mest.go.kr
전화 02-2100-6847 /전송 02-2100-6228 / kyh10160@mest.go.kr / 비공개

쉽고 편리한 우리집 새주소,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

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련 질의 회신

<13.3.13.(수), 교과부 체육예술교육과>

□ 사고 개요

- 청구인(만16세)은 2012.4.18.(수) 축구부 훈련시간에 1대1 돌파 훈련 중 볼을 뺏으려는 상대학생의 무릎과 사고학생의 무릎이 부딪치며 우측 슬관절 연골이 파열되었음
- 위 사고로 치료비 6,337,970원을 청구하였으며 학부모가 가입한 실손 보장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임

□ 질의 사항

- 위 사고에 따른 공제급여액 결정시 학부모가 가입한 실손보장 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여부

□ 답 변

-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상대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은 가입자가 한정되고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과 다르나, 그 실체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상호보험과 유사(대법원 1998.3.13, 선고 97다52622 판결 참조)하며 상법 제664조에 의해서 상법 보험편의 규정(제638조 내지 제739조)의 준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
 - 실손의료비 보상 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으로 보며, 상해보험 중 의료비 보상 특약 역시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간주하므로 손해 보험의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중복 보험은 비례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
 -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와 실손 의료비 보험급여를 동시 수령하는 경우,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게 되므로, 상법 제672조를 적용하여 비례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※ 다만, 정액을 지급하는 상해 보험, 생명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므로 상법상으로도 비례 배분하지 아니함